

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제정안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1439호, 2012. 5.23. 공포, 2012.11.24 시행)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라,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으로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와 위험군 등 일부 권장대상에게 필요한 장티푸스, 인플루엔자, 신증후군출혈열 및 폐렴구균(65세 이상의 노인에 한함)을 지정하여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행정예고(2013. 1. 29. ~ 2. 12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2) 규제심사 : 규제심사대상 없음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-27호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제12호의
규정에 의한 「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」을 다음과
같이 제정·발령합니다.

2013년 2월 20일

보건복지부장관

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제정안

제1조(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
법률」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
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
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3호, 제5호의 감염병은 위험
군 등 일부 권장대상(제5호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에 한함)에
대해서만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.

1. 장티푸스
2. 인플루엔자
3. 신증후군출혈열
4.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

5. 폐렴구균

제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제5호의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